

대미 방산 수출의 제도적 장벽에 관한 연구★

김종열*

요 약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수출입은 그 규모면에서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산 교역의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고, 무역역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벽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우선 대미 방산수입액의 규모는 2011년도 기준 대미 방산수출액의 수십 배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심각한 방산분야 역조현상은 미국의 국방획득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 FTA에 군수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미국이 정부조달 시에 미국산 구매 우선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 국방성이 국방조달에만 적용하고 있는 미국산 100%의 조달을 규정한 베리 개정법 등이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베리 개정법은 미국 국방조달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대미 방산 수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한미 간에 상호 방산양해각서를 맺는 것이다. 상호간에 각 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의 체질도 선진화하고 대미 방산 수출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시에 절충교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Barriers in the Defense Trade between Korea and U.S.

Kim Jong Ryul*

ABSTRACT

There has been an adverse balance between Korea and U.S. in defense trad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 defense trade imbalance in terms of numerical values, and also analyzes the institutionalized barriers to Korea defense exporters imposed by laws and regulations. It is found that the amount of Korea defense import is several tenfold that of the export to U.S. in 2011. The barriers are analyzed to be the American laws and regulations. The Buy American Act is applied to the U.S. government procurements and the Berry Amendment is applied to the defense procurements. These two laws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which allows the U.S. Dept. of Defense to buy only American products. To overcome the barriers, Korea ought to sign a defense MOU with U.S., so that the Buy American Act and the Berry Amendment can be waived.

Key words : defense trade imbalance, institutional barrier, buy American Act, Berry Amendment, defense MOU

접수일(2013년 9월 9일), 수정일(1차: 2013년 10월 11일),
계재확정일(2013년 10월 17일)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1. 서 론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최근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미국 등 46개국과의 FTA가 발표되었다^[1].

그렇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방산분야 교역은 별도의 양상을 띄고 있다. 한미 FTA협정에 한국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방산분야, 미국의 국방부 군수물자 분야는 자유무역 상품거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즉 군수물자에 대한 수출입은 별도의 통제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한 미 국방부 간에 방산분야에서의 연구개발, 생산, 군수조달 등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이 근거가 되는 방산 양해각서(Defense MOU)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세계 방위산업과 무기판매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미국시장에 한국의 방산분야 진출이 막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도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방산수출 실적은 약 23억불이다. 이중에 북미지역은 약 6억불 규모로 전체의 약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2]. 미 국방성이 제시한 한미 간의 방산교역 데이터를 보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방산 수입규모는 2011년도에 약 88억불 수준이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방산물자는 약 11억불로(주한 미군의 한국 내 현지 구매액 포함) 수입의 1/8 수준이다^[3]. 수년 동안 지속되어온 방산부문의 무역 역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 간의 방산무역 역조현상은 지금까지 한국의 방위산업 정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정부가 자

주국방 실현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보호에 치중하여 온 측면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미 정부의 방산분야에 대한 수출입 통제시스템이 근본적인 원인과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연구목적과 방법

한국의 방산업체는 개방체제에 의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선진화된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육해공군이 요구하는 내수시장의 수요만을 충족시키는 체제이다. 그래서 국내 방산업체의 가동률의 저하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 방위산업의 기반을 변환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특히 한미 간의 방산무역 역조현상을 극복하고, 세계 무기거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미국 방산시장으로의 진출이 요구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대미 방산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한국의 대미 방산수출입 역조현상을 분석하고, 그 원인요소인 미 정부의 제도적 장애물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향후 미국으로 방산분야 진출을 위한 대안 도출에 기여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는 미국 국방분야 정부조달의 진출 및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미 간의 방산분야 수출입 규모를 찾아내어 방산무역 역조상태를 정량적으로 밝혀내고, 대미 방산분야의 무역 역조현상을 조래하는 미국의 제도적 장애물에 대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주된 연구범위이다. 그리하여 대미 정부조달시장 중에 국방 분야 조달에 진출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도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선행되어 발표된 대미 방산수출에 관한 논문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간의 방산 무역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계량적 분석을 하고, 공개된 미 정부 최근 문서를 참조하여 미 국방조달의 시스템적 장애물요소를 분석함으로써 현실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 한다.

3. 한미 방산수출입 현황분석

3.1 세계 무기거래 현황 분석

2012년 8월 미의회보고서는 2011년 전 세계 재래식 무기수출 계약규모는 85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2010년 445억 달러에 비해 91.7% 상승한 것으로 2004년 이후 최고수준이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⁴⁾. 한국의 국방기술품질원의 2012 세계 방산시장연감에서 제시한 무기수출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7~2011년 기간의 전 세계 무기수출계약규모는 2,618억 달러로 2002년~2006년 기간의 2,016억 달러보다 15.2% 증가하였다. 2002년 ~ 2011년까지의 국제 무기 수출액의 76.6%를 수출 5개국인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이 점유하고 있다. 미국이 30.2%, 러시아가 24.9%를 차지하고 있다⁵⁾. 국제 무기거래 규모의 증가추세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가 제공하는 데이터이다⁶⁾.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 무기거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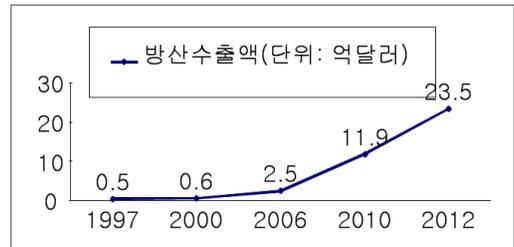


(그림1) 국제 무기거래 규모

3.2 한국의 방산 수출입 현황분석

세계적인 무기거래가 각국의 국방비 삭감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방산 분야야 수출과 수입도 예외는 아니다.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한국의 무기수출 규모는 2012년도에 약 23.5억 불 규모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단순한 수출 규모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수출대상국의 수도 2006년 47개국에서 2012년 74개국으로 늘어났고, 수출업체수도 2006년 47개 업체에서 2012년 116

개 업체로 양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⁷⁾. (그림2)에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연도별 수출현황에서 보듯이 최근에 급성장세를 달성하고 있다.



(그림2) 한국 방산수출 규모

우리의 무기수입규모 추세를 SIPRI 데이터를 기준으로 1990년 불변가로 표시하면 (그림3)과 같다.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⁸⁾.



(그림3) 한국 방산수입 규모

3.3 대미 방산수출입 현황 분석

대미 방산수출입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그 규모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선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의 대미 방산 수출입에 대한 데이터를 유규열의 논문에서 발췌하였다⁹⁾.

<표1> 대미 방산 수출입 규모(단위: 억불)

연도별	대미수출액	대미수입액
2002	0.05	54.9
2003	0.74	5.9
2004	1.13	6.1
2005	1.38	3.6
2006	1.28	21.2

<표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초에 대미 방산 수출액의 규모는 방산 수입액보다 지극히 미미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산 무역규모의 대미 역조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방산기업의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의 부족이 원인을 찾기보다는, 미국산 구매우선법 등과 같은 미국의 방산시장 보호 정책이나, 미국 조달정보 획득의 어려움, 수출마케팅 부족 등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조사되고 있다.

최근의 대미 방산 수출입규모에 대한 데이터를 미 정부 공개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공개 자료는 획득이 어려워 미국 자료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미 국방성은 매년 해외로부터 구매한 군용물자, 서비스, 그리고 시설공사를 포함한 금액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한국입장에서 보면 대미 방산 수출액에 해당된다. 2009-2011년 3년간의 데이터만을 확인하여 종합하였다^{[10][11][12]}. 대미 방산 수입액도 역시 의회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하였다. 미국이 대외로 판매한 군용물자와 서비스는 2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FMS(정부간 판매 : Foreign Military Sales) 와 DCS(상업구매; Direct Commercial Sales)이다. FMS는 미 국방성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정부와 정부간의 판매제도이며, DCS는 미국의 방산기업이 직접 판매하는 제도로 미 국무성의 방산교역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이다. 한국에 대한 미 국방성의 FMS 판매액^[13]과 미 국무성이 승인한 DCS 판매 데이터를 의회보고서^{[14][15][16]}에서 발췌하여 <표2>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표2> 대미 방산 수출입 규모(단위: 억불)

연도	대미 수출액	대미수입액		
		소계	FMS	DCS
2009	20.5	50.3	47.7	2.6
2010	9.9	62.8	60.0	2.8
2011	11.1	88.4	71.8	6.6

2000년 초반의 통계처럼 방산 분야의 무역 역조현상은 최근에도 별다른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다. <표2>에서 제시된 대미 수출액의 규모에는 주한 미군의

한국 내 현재 구매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며, 전체 대미수출액의 90%가 주한미군의 현지구매에 해당된다. 따라서 순수한 미국 내로의 수출은 약 1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십 배의 방산무역 역조현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준이며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대미 방산수출 장애물

4.1 미 정부 국방조달 시장

미국의 주정부를 제외한 연방정부 정부조달 금액은 2008년 이후 소폭 감소세를 나타내어 2010년에는 약 5,350억 불 규모에 이른다. 연방정부의 조달기관별 규모는 미 국방부가 2007년도 기준 약 3,330억불로 전체 연방정부 조달 규모의 약 71.9%를 차지하고 있다^[17]. 연방정부의 대부분이 국방관련 물품이나 서비스이다. 미 연방 정부가 국외로부터 조달하는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386억불로 전체 연방정부 조달의 7.2%에 불과하다. 그중에 국방조달은 281억불 수준이며, 외국산 조달의 대부분은 해외 주둔 미군의 현지조달로 전체 외국산 조달의 93%가 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미 정부의 조달은 외국으로부터의 조달보다는 미국 내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미 정부의 국방조달 시장에 진출하여 방산 수출을 하기란 제도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이다. 한미 간에는 FTA가 2012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대미 진출에 대한 기대는 크다. 그렇지만 미 정부 조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방 분야는 FTA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18]. 미 정부는 군에 사용하는 모든 상품의 대부분을 분류하여 수출입에 대한 승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입 통제 상품을 미 군수물자목록 (USML: United States Munitions List)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미 간 자유무역 협정서 부속서에서 USML에 대한 조달은 자유무역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목록은 카테고리 1 화기류부터, 카테고리 21 기타 군수품목까지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요 품목을 보면 무기, 탄약 및 폭발물, 항공기 및 항공기 구성품, 함선 및 해상장비, 수공구, 피복, 개인장구 등이다. 대부분의 군수물자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특수금속에 대한 조항을 보면, 특

수금속이나 특수금속 하나 이상을 포함한 어떠한 상품의 조달도 적용대상을 하지 아니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수금속에 대한 정의도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하나만 든다면, 알루미늄, 크롬, 코발트, 텅스텐 등이 하나라도 0.25%를 초과하는 금속도 특수금속에 해당된다. 미국 국방조달 시장의 대한 상품의 구매는 미 정부가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4.2 미국의 방산수입 통제 제도

4.2.1 미국산 우선 구매법[19]

1973년에 제정된 미국산 우선 구매법(BAA: Buy American Act)는 미국 정부가 자국 영토 내에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미국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제조품만을 구매할 수 있다는 법이다[20]. 이법은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제 25편에 의해 시행된다. 1979년의 무역협정법(TAA: Trade Agreement Act)에 의해 19만 달러 이상의 조달은 미국산 우선 구매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WTO와 FTA체결국과의 미국산 구매우선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이다. 미국이 타 국가와 FTA체결 시에 상호 양허 하한선 설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 FTA는 군수물자가 자유무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미국에 방산 수출 시에 미국산 구매 우선법이 지켜져야만 한다. 1994년도엔 연방조달 간소화법(FASA: 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가 제정되어 2,500달러 미만의 조달은 미국산 우선 구매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 3,000달러로 격상되었다.

여기서 미국산이라 함은 가격기준으로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5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생산 제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BAA가 적용되는 경우 미국산 생산제품에 대해 가격 특혜가 주어지는데, 일반기업이 제조한 물품의 경우 6%, 소규모기업이 제조한 물품의 경우 12%, 국방조달의 경우 50%의 가격특혜가 미국기업에 부여된다. 즉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군수품의 가격은 미국내 제품보다 최소한 50% 이상 비싸게 가격이 책정된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정부조달기관이 미국산 물품의 구매가 공공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미국산 물품의 조달이 비

합리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경우이다.

4.2.2 베리 개정법(BA: Berry Amendment)[21]

베리 개정법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군대가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군복을 입고 미국에서 생산된 만든 음식을 먹도록 하여 미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1941년 국방예산법(DOD Appropriations Act)로 처음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번 개정을 거쳐 2001년에 미국 법전에 포함되었다. 이법은 미 국방부가 주로 식품, 의복, 섬유, 특수금속 등의 조달에 있어서 외국산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특수금속은 탱크, 선박, 비행기, 미사일, 차량 등의 구성품에 소요되는 강철, 합금(니켈, 타이테늄, 코발트 등)으로, 미 국방성이나 미 주계약업체가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것만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22].

베리 개정법과 위의 미국산 구매 우선법과의 차이는 우선 적용대상기관이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은 모든 연방정부의 기관에 적용되나 베리 개정법은 오로지 국방성에만 적용된다. 그 적용지역은 미국산 우선 구매법은 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조달에 적용되나, 베리 개정법은 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산 우선 구매법에서 미국산의 기준을 미국에서 생산되는 구성요소가 전체 비용의 50%를 초과하면 미국산으로 인정하나, 베리 개정법은 100%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베리 개정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단지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되더라도 생산량이 적거나, 또는 긴급한 비상상황 등이다. 이러한 베리 개정법은 미국 내에서도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으나 개정될 소지는 적어 보인다.

4.2.3 미 국방조달규정

미 연방 정부의 구매조달절차는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따른다[23]. 각 정부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건설 등의 구매에 적용되는 최상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약 1,6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규정으로 정부조달에 있어서의 게임 룰이다. 미 국방부는 이 FAR를 기준으로 국방획득이라는 특수성이 맞게 보충된 별도의 국방획득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를 FAR의 'Supplements'라 부르고 미

국방성은 DFARS(국방조달규정: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라는 군수물자나 군수설비 조달 시에 적용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DFARS는 위의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배리 개정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 DFARS의 해외구매 규정에서는 구매 가능한 제품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적합한 물품(eligible product)인가 이다. 이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군수물자를 상호 협정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경우이다. 적용대상 물품이라면 구매 적합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자격국가(qualifying country)의 물품인가 이다. 유자격 국가란 미국과 상호 방산양해각서(defense MOU)를 체결하여, 양개 국가가 상호 장벽을 제거하고 양국가의 방산물자와 서비스를 구매 판매하도록 동의한 국가를 말한다. 현재 미국은 호주, 영국, 스페인 등 23개 국가와 방산양해각서를 서명하여 유자격국가로 분류되어 있다^[24]. 물론 양해각서마다 상호 구매 품목에 대한 적용대상을 달리 명시하고 있어 국가별로 적용 품목은 상이하다.

한국과 미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방산물자와 서비스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미국과 방산양해각서에도 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의 제품은 미 국방성 입장에서 보면 적합한 물품이지도 않고, 유자격국가의 물품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애물이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 수출입에 있어서 무역역조 현상을 발생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4.2.4 방산 양해각서 (Defense MOU)

미 국방성은 70년대 NATO 국가들이 대미 방산무역의 극심한 역조현상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정치적 유대관계를 계속 보존하고자 방산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미국은 NATO국가들과 국방조달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무기체계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무기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25]. 이 양해각서의 특징은 무역협정의 성격이 아닌 양국 국방장관간의 서명으로 체결되며, 자국산 구매 우선이나 관세의무를 삭감하거나, 타국의 계약자들이 불공정한 차별 없이 미국 내 기업과 동일한 경쟁체제로 국방조달 시장에 참여를 허락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 국방성은 현재 23개국과 방산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미국 국방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상호 국방획득에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MOU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유형이 분리된다. 포괄적 상호조달협정 방식(Blanket Public Interest Exception)과 구매서별 예외 요구방식(Purchase-by-purchase Exception Required)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포괄적 상호조달협정방식으로 연구개발, 장비와 군수품 조달, 국방서비스의 조달에 걸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과 영국은 2012년에, 미국과 호주는 2013년에 방산교역협력조약(Defense Trade Cooperation Treaty)를 조인하였다. 미국은 군수물자의 수출입에 대한 통제를 미 국무성이 주관하여 최종 승인하는데, 군용물자는 국방성의 검토를 거치고, 민간군용 물자는 상무성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하게 된다. 미국 내 군수물자의 수출입 승인절차를 정한 규정이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인데, 그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그런데 미국과 영국, 미국과 호주는 조약을 체결하여, 군수물자나 군사기술의 수출입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양국 간의 방산 물품과 비밀 군사기술의 교류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제 3국에의 수출 승인도 더욱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적용 받게 된 것이다^[27].

미 국방성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도 기준 외국으로부터 조달한 국방조달 규모는 약 217억 불이다. 그 중 약 57.6%에 달하는 125억 불이 상호 방산조달 양해각서나 다른 무역협정에 근거하여 조달되었고, 이는 미국산 구매 우선법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제품을 구매한 액수를 의미한다^[28].

4.3 대미 방산수출 장애물 해소 방향

이상에서 미 정부 국방조달시장에 대한 철저한 통제 정책을 관련 법령 위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대미 방산수출의 장애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핵심적인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도 미국과 방산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상호 양국의 국방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방산 수출입의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내수 충

족위주의 방위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있다. 선불리 국내 방산시장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에 방산시장을 개방할 경우 미국의 대형 방산기업에 의한 국내조달시장의 잠식으로 국내의 방위산업 기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그러나 한미 방산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내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안이한 경영을 추구하는 국내방산업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내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체제로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방위 산업의 국방과학기술력의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9]. 무엇보다도 대미 방산수출의 통로를 만들어 방대한 방산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국방조달시장으로의 진출 뿐 만 아니라, 미국의 대형방산기업에 한국의 방산업체가 구성품 납품이나, 공동 협력생산 등의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낮은 수준의 협력인 상호 군수품 품질 보증 MOU는 체결한 상태이나, 포괄적 상호조달협정 형식으로 MOU를 맺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영국을 비롯한 약 25개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방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으나, 미국만은 제외하고 있다.

다음으로 절충교역의 효과적인 활용이다. 절충교역은 무기수입국의 입장에서 수출국 또는 수출업체로부터 무기수입에 따른 반대급부로 받는 국가 간의 교역형태이다. 산업경제연구원의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절충교역 정책은 반대급부로 핵심기술획득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30]. 1983년-2012년 간 전체 절충교역의 48% 정도가 기술획득이고, 부품생산 및 수출은 31% 수준이다. 절충교역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들은 상당부분 국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 제품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절충교역이 향후 사용될 핵심기술 획득보다는 군수물자나 제품의 수출확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적용 비율도 현재 한국의 절충교역지침(방위사업청지침 제 2012-1호)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경쟁여건이 형성된 상업구매의 경우에 50%,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업구매는 10%, FMS 사업은 절충교역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FMS 구매가 많은 한국은 절충교역을 전략적인 방향에서 방산무역역조현상을 타개하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세계의 국제무기거래 규모는 각국의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방산수출도 최근 들어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며 국가 경제에 기여할 잠재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각 국가가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통해 해외시장의 확보와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한미 간의 방산 수출입 규모와 그 역조현상을 정량적으로 규명하였다. 미 국방성이 보고한 한미 간의 방산교역 데이터를 보면, 2011년 기준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산수출 규모는 방산 수입규모의 1/8 수준이다. 수년간 지속되어온 방산부문의 무역 역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산분야 한미 간 무역역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미국의 국방조달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미 국방성이 구매하는 대부분의 군수물자는 미국산 구매 우선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배리 개정법은 미국산 구매 우선법보다도 더 엄격하게 식품이나 의류, 특수금속에 적용하여 100% 미국 내 생산제품만을 구매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국방조달규정은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배리 개정법을 시행하는 규정으로, 미 국방부가 구매 가능한 제품의 기준을 적법한 물품과 유자격 국가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에서 군수물자를 적법한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상호 방산 MOU를 체결하여 유자격 국가가 되어야, 미 국방조달 시장으로의 진출이 원활하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미 간의 방산수출입 역조현상의 원인이 미국의 국방조달시장 통제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규명하였다.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는 한미 간의 방산 MOU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방위산업의 개방이라는 두려움보다 방산업체의 선진화, 글로벌 경쟁체제로의 변환, 대미수출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절충교역 정책의 효과적인 활용도 요구된다. 절충교역 시 기술획득에 만 우선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군수물자 생산과 수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그 적용비율도 상향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미 간의 방산 MOU 체결은 어느 시점에,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군수물자에 적용할 것인가는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미 간 방산분야의 비정상적 역조 현상을 정상화하고, 방산분야를 상호 개방하여 군수물자를 공동 생산하는 체제가 한미동맹의 또 다른 발전된 모습일 것이다.

참고문헌

- [1]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new2/ftakorea/policy.asp> (검색일: 2013. 8.22)
- [2]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수출 현황 2012”,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검색일: 2013. 7. 6).
- [3] 미국방성 보고서, “Report to Congress on DOD FY2011 Purchases from Foreign Entities”, May 2012.
- [4] 미의회보고서, “Conventional Arms Transfer to Developing Nations, 2004-2011”, Richard F. Grimmer, Paul K. Kerr, p. 4, CRS Report for Congress 7-5700, Aug 2012.
- [5] 국방기술품질원, “2012 세계방산시장연감”, 13-23쪽, 2012.
- [6] SIPRI, *Armstransfer Database*, <http://www.sipri.org/databases/armstransfers> (검색일: 2013. 7. 19)
- [7]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수출 현황 2012”,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검색일: 2013. 7. 6).
- [8] SIPRI, *Armstransfer Database*, <http://www.sipri.org/databases/armstransfers> (검색일: 2013. 7. 20)
- [9] 유규열, “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59-64쪽, 2008.8.
- [10] 미국방성 보고서, “Report to Congress on DOD FY2009 Purchases from Foreign Entities”, Aug 2010.
- [11] 미국방성 보고서, “Report to Congress on DOD FY2010 Purchases from Foreign Entities”, Jul 20 11.
- [12] 미국방성 보고서, “Report to Congress on DOD FY2011 Purchases from Foreign Entities”, May 2012.
- [13] 미국방성 국방안보협력국, “Historical Facts Book”, Financial Policy and Analysis Business Operations, 15쪽, Sep 2012.
- [14] 미 국무성 방산교역국(DDTC), “2009 Section 65 5 Annual Military Assistance Reports”, 2009.
- [15] 미 국무성 방산교역국(DDTC), “2009 Section 65 5 Annual Military Assistance Reports”, 2010.
- [16] 미 국무성 방산교역국(DDTC), “2011 Section 6 55 Annual Military Assistance Reports”, 2011.
-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미 FTA에 따른 미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 1-2쪽, 2011.
- [18] 한미 FTA 협정서, 제 17장 정부조달, 부속서 17-가, 2011.
- [19] 정지원, 박혜리, ‘한미 FTA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31쪽, 2008.
- [20] 미공법, 41 USC 10a.
- [21] 정지원, 박혜리, ‘한미 FTA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1-33쪽, 2008.
- [22] John R. Lucky, “Domestic Content Legislation: The Buy American Act and Complementary Little Buy American Provisions”, CRS report, 8-9쪽, 2012.
- [23] 미 연방획득규정, 최신버전 홈페이지, <http://www.acquisition.gov/far/> (검색일: 2013. 8. 21).
- [24] 미 국방획득규정, <http://www.acq.osd.mil/dpap/dars/dfarspgi/current/index.html> (검색일: 2013. 8. 20), subpart 225.0.
- [25] 유규열, “한미상호군수조달협정 체결 타당성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07-용역연구보고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31-43쪽, 2007.
- [26] 방위사업청,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2012.
- [27] US DoS, Press Statement, <http://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3/05/209482.htm> (검색일: 2013. 8. 21)
- [28] 미국방성 보고서, “Report to Congress on DOD FY2009 Purchases from Foreign Entities”, 1-2쪽, Jul 2013.
- [29] 유규열, “한미 FTA 정부조달 협정에 따른 한미

상호 국방조달 MOU 추진방향”, 무역학회, 제33권 제2호, 17쪽, 2008.

- [30] 산업연구원, “청년실업자의 6%, 방위산업 절충교역으로 해소 가능”, e-KIET 산업경제 정보, 제551호, 5-8쪽, 2013.

[저 자 소 개]



김 종 열 (Kim Jong Ryul)

1980년 3월 학사
1989년 12월 무기체계공학 석사
1996년 5월 재료공학 박사
2011~현재 영남대 군사학과
부교수

email : jrkim1201@yu.ac.kr